

2022년 제1회 건축위원회(구조전문위원회)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검단신도시 AB21-2블록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심의일자	2022. 1.11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제일건설(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		
	지번 AB21-2블록	관련지번	
건축물현황	대지면적 35,794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	건축면적 7,887.1366㎡	건폐율 22.03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25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9동
	최고높이 71.6m	용적률 227.87%	연면적 합계 123,838.6585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구조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재에 적용할 내진상세를 명확히 표기하여 시공 시 혼동 없도록 도서 정리할 것 ○ 시공 중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대해 착공 전 원 설계자 협력 계약서류를 제출 할 것 ○ 성능설계를 진행하였으므로, 아파트 벽체의 설계에 500Mpa 이상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진용 철근으로 사용할 것 ○ 실시 설계 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(벽체의 면내 전달력)를 추가 진행할 것 	
	(토목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aker 지지블록과 건축 기초 파일과의 간섭부위 재조정 할 것 ○ Raker 지지를 계획된 단면의 띠장 하부에 Bracket을 도시할 것 ○ 주차장 구간의 기초형식을 PHC Pile보다 경제적인 기초를 검토 할 것(주동대비 지지력이 적어도 되므로) 	
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-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-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		
심의결과	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		
	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		

2022년 제1회 건축위원회(구조전문위원회)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5블록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심의일자	2022. 1. 11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배정권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		
	지번 공동5블록	관련지번	
	대지면적 80,429.1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9,748.8657㎡	건폐율 12.121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47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9동
	최고높이 142.5m	용적률 249.46%	연면적 합계 295.136.8052㎡

	구 분	심의결과
심의내용	(구조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이아프레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코어부분 슬래브 설계를 보완할 것 ○ 근린생활시설 기초계획 도서에 정리할 것 ○ 동 내 좌우 다이아프레임 불연속 부분에 대해 횡력에 대한 슬래브 두께 증가 및 배근 검토 반영할 것 ○ 지하주차장 지진하중 산정 시토심의 질량이 관성력의 지진하중으로 작용하도록 지하구조 내진설계를 진행할 것
	(토목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흙막이 벽체의 수압 산정을 위한 침투해석에 적용된 투수계수 값을 지반조사보고서의 시험 값을 반영하여 재확인 할 것 ○ PHC, PF 기초 상세 표시 도면 작성할 것(착공 도서) → 평면도, 기초 제원 표 수록
	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
심의결과	<p>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조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	---